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2. 12) 상정

○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2. 1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김 창 열)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법인·단체 및 민간 기업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기관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법인·단체 및 연구개발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제5조의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1호
의결 년월일	2006.12.21 (제132회)

제출년월일 : 2006. 11. 13.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법인·단체 및 민간기업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의 효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기관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유재산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법인·단체 및 연구개발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제5조의2)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사용료) 제5조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사용료) 제5조에 의한 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연간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일할계산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요율을 정한다.</p>	<p>제5조의2(사용료) 제5조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p>